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3. 2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0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3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등(안 제2조~제3조)
- 회의 및 직원(안 제4조~제5조)
- 인수위원회 예산·활동 지원 및 자문위원(안 제6조~제7조)

○ 수당,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, 운영세칙(안 제8조~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직 당선인이 당선
이 결정된 때부터 원활한 인수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
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
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
성하고 존속기간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
도록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.
-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
둘 수 있으며 필요시 영등포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요청할 수 있도록
함.
-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
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
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
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
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함.
- 지방자치단체에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이전에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
에는 그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”는 법 조항 외에는 단체장
직 인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인수지원단의 구
성·운영의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한 「지방자
치단체장직 인계·인수 매뉴얼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지원단을 설치·운

영해 왔으나, 올해 전부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설치 시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됨.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직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 수를 통해 구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계속성과 안 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한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며, 향후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등을 공포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7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3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('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구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등(안 제2조 ~ 제3조)
- 다. 회의 및 직원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위원회 예산·활동 지원 및 자문위원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수당, 위원회 활동 경과보고, 운영세칙(안 제8조 ~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2. 2. 10. ~ 3. 2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

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직원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등포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문위원)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,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